

91.10.2

⇒ 남성 중심 정책으로

인간 여성 가구주 불이익

평생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있던 서울 성동구청 청소과 직원 이경희(59·여)씨와 박정자(53·여)씨는 30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근로자주택 당첨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충격을 받아야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9일 대치지구 근로자아파트 17평형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최종 접수결과 미달돼 당연히 당첨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미화원으로 나섰고 박씨 역시 지난 79년 종로구청 청소과에 근무하다 목을 다쳐 노동력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미화원이 되어 모두 10년이상 여자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청소일을 해왔다.

“비록 노동력은 잃어버렸지만 남편과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자의힘으로 가구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관습과 전통에도 어긋나는 것이지요.”

남편과 가족

동네방

가구주아닌 여자 '가장'의 설움

이씨 등은 도시개발공사에 명단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지난달 서류심사 과정에서 법적 가구주가 아닌 것이 밝혀져 자격 미달로 탈락됐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씨는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해 가구주가 미혼인 아들로 되어있고 박씨는 남편(55)이 가구주이기 때문에 근로자아파트 분양자격인 '가구주'가 아니라 탈락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씨 등이 “왜 자격미달로 탈락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별 통보해줄 의무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씨는 남편을 잃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지난 80년부터 여

의 생계를 위해 남들이 하길 꺼리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온 '실질적인 가구주'인 이들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형식적인 '법적 가구주'를 내세우는 행정편의주의의 덫에 걸려 내집마련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